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3년 6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신기술지원과 정승희 과장(509-7286), 박성유 연구관(509-7287)

NET인증 기술로 NEP인증 신청시 1차심사 면제

- '기술성' 항목 심사생략, 7월 1일부터 시범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하여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 1차심사를 면제하여 **기술성심사를 생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음.

*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현행 NET 및 NEP 인증은 모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임의제도로서,

○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 및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됨에 따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단계별 인증평가 절차 비교>

구분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1차심사	- 서류·면접 심사 ·**기술성**(적용·재현성포함), 경제성, 경영성, 시제품 확인	- 서류·면접심사 ·**기술성**, 경제성, 제품개발 및 실용화 정도, 평가기준 및 방법제정
2차심사	- 현장심사 ·기술평가, 시제품 평가, 품질경영시스템	-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핵심기술여부 현장 확인, 품질경영시스템 확인, 시료채취후 시험의뢰
3차심사	- 종합심사 : 인증신기술 선정	- 종합심사 : 신제품인증 여부 결정

□ 금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 NET인증 기업이 NEP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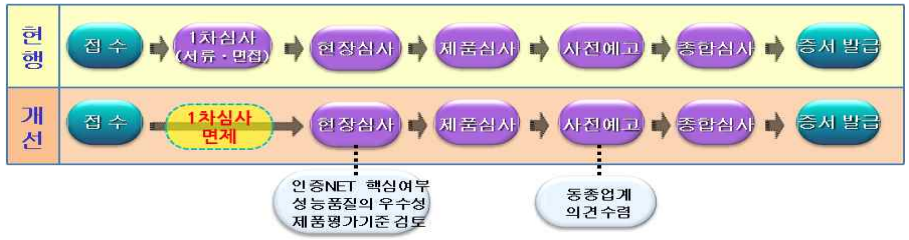
* 1차심사(인증평가위원회)를 위한 기업의 "발표자료 준비 및 평가위원회에서 브리핑"은 신청기업에게 시간 및 비용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

□ 다만,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 인증평가의 부실화 우려를 불식하고, 현행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임.

*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신기술의 핵심성 여부, 기존제품 대비 성능품질이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동종업계 의견 수렴

< 개선 전·후 NEP인증 심사절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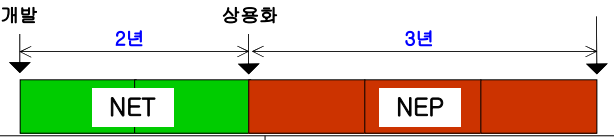


□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 NET 및 NEP인증 제도간 연계지원에 의한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1. 신기술제품 인증제도(NET·NEP) 비교
2. NET·NEP 인증평가시 심사기준 비교

[참고 1] **신기술제품 인증제도(NET · NEP) 개요**

구 분		신기술 (NET) 인증	신제품 (NEP) 인증
정 의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인증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한 제품 중 성능·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증
영문명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NEP (New Excellent Product)
근거조항		「산촉법」 제15조의2(신기술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	「산촉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인증부처 (평가기관)		미래창조과학부(산업기술진흥협회) 국토교통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인증대상		2년이내 상용화 가능기술	판매 시작 3년 이내 신제품
			
인증기간	인증기간	3년 이내	3년
	인증연장	3년 이내의 범위	(인증)연장 3년, 추가연장 3년
	인증 유지 가능 기간	최장 6년 (최초 3년+연장 3년)	최장 9년 (최초 3년+연장 3년+추가연장 3년)
인증 마크 사용		신기술 적용 제품에 NET마크 사용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절차 필요 (「산촉법」 시행령 제18조의4 등에 근거)	신제품인증 제품에 NEP마크 사용
			
지원제도	기본취지	개발기술의 상용화 지원	개발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
	공공구매	우선구매 추천 (상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적용제품)	의무구매 (해당품목의 20%)
	자금지원	「산촉법」 시행령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 신제품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근거	
	기타지원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 조세지원(R&D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사업 ※「산촉법」 제18조(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에 근거

[참고 2] **NET · NEP 인증평가시 심사기준 비교**

구분	신기술(NET) 인증 * NET 운영요령 별표 2	NEP(신제품) 인증 * NEP 운영요령 별표 2	비고
1차 심사	○ **기술성 평가** - 국내외 기술수준 대비 기술적 우위 및 기술적 완성도(재현성) - 기술의 성장·발전 가능성, 기술 응용 및 **타제품 적용가능성** 등 ○ **경제성 평가** - 기존제품 대비 성능·품질 우위성, 시장수요 충족도 및 가격 수준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 **경영성 평가 및 기타** -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기술개발 능력 보유 정도 -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제품** 확인 및 기타 필요 자료	○ **기술성 평가** - 국내외 기술 대비 기술적 우위, 기술적 완성도(**성능·품질** 재현성) - 기술의 성장·발전 가능성, 핵심개발 기술과 **제품 본연의 기능·성능**과의 직접적 관련정도 등 ○ **경제성 평가** - 기존제품 대비 성능·품질 우위성 및 생산·가격 경쟁력 등 -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 ○ **기타 사항** - **제품 개발·실용화 정도** - **인증제외 및 강제인증 대상여부** -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우수품질 제품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수준) - 해당기술 개발능력 보유정도 - 공인성적서 제출,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등	서류·면접 심사
2차 심사	○ **기술평가** - 기술개발현황, 기술개발 방법 - 개발기술의 문제점(한계) 극복 정도 및 기술의 신뢰도 등 ○ **시제품평가** - 시제품의 구조 및 성능 수준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및 제품설계수준 등 ○ **품질경영체계** - 생산라인 구축 정도, 공정관리, 시험·검사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 **자금지원**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 필요성	○ **제품평가** -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수준 - 제품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 제품개발 문제점 (한계) 극복정도 ○ **제품시험** -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 성능·품질 우위정도,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추가확인 자료 등 ○ **품질경영체계** - 품질경영 및 자재 관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시험·검사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 **기타 사항** - 신기술제품의 성능·품질 우위정도 -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및 제품설계 수준 등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3차 심사	○ **인증의 필요성** - 지원 및 파급효과 등	○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 서류·현장·제품 심사결과의 적정성, 인증의 필요성 등	종합심사